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7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김진희 의원 등 5명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센터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및 위탁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교육기반을 지원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돌봄지원과 그 가족의 휴식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평생교육센터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과 교육시설의 접근성의 미흡으로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경기도에서 2024년부터 31개 시·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기에, 타 시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